

16.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449호 1997. 12. 26

주요 골자

- 가.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에 사용하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을 용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나. 도로 및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후퇴하여야 하는 건축물중 관리사 등 부속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500제곱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다. 공동주택의 설계기준이 표준화됨에 따라 유효면적(약 5%의 바닥면적 증가 효과)개념을 도입하여 표준화설계 촉진

개정이유

지난 1997년 5월 29일, 9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내용을 보완한 건축법중개정법률이 12월 1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택회보